

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

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“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(2011. 09. 23 훈령 제747호)”을 “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.

2014. 5. 23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」 일부개정(안)

### 1. 개정이유

건설기술관리법,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건설기술관리법,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

### 3. 기타 참고사항

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)의 정보마당

→법령정보→훈령/예규/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(전화 : 044-201-3555, 355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

## 「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」 일부개정(안)

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”  
을 “**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**”으  
로 한다.

제2조 중 “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”을 “**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  
1항**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2014년 9월 22일”을 “**2017년 5월 22**”으로 한다.

부 칙(개정 2014.5.23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